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99 발의연월일: 2022. 5. 4.

발 의 자 : 임이자 • 권명호 • 김성원

김승수 · 김영식 · 김형동

박대수 · 정점식 · 주호영

하영제 • 한무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함.

이와 함께 개정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0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

- 1)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함.
- 2)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함.
- 3) 산재보험 적용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 1)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함.
- 2) 평균보수는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발생 사업 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 및 근로자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3)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비자물가변동 률에 따라 매년 증감함.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 준을 준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라.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

- 1)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
- 2)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 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특례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업급여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구 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바. 부분 휴업급여 산정방식 개편

- 1)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함.
- 2) 새로운 부분 휴업급여 산정기준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함.

사.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골프장캐디 등 일부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휴업등 신고제도" 도입 아.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 1)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2)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본인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 498)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험사업을"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로, "질병관리청·국세청"을 "질병관리청·국세청·경찰청"으로,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을 "날에 해당하는"으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을 "날에 대한"으로, "9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를 "날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장의4(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 제91조의15(노무제공자의 범위 등) 이 장을 적용함에 있어 노무제공자 등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 다.

-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 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2.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의16(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본다.

-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노무제공 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 로 본다.
 - ③ 제91조의15제3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 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할 수 있다.
 - 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5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수 있다.

제1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플랫폼 운영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직종·보수·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1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제52조 및 제56조"를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20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본문 및 제54조제2항"을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20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8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 제3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 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 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 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 용한다.
-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19 및 제91조의 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 제6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 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규정 제125조제1항에 따 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본다. 이 때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제125조 제8 항·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

정

아

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 리청 ·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 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 질병관 리청・국세청・경찰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 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 등록 · 가족관계등록 · 외국인등 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②・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 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 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 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 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 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 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

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u>날에 해당하는</u>
<u>날에</u> 다
<u>한</u>
<u>80</u>

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u>날 또</u> 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 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 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52 조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u>③</u> (생 략)

<u><신 설></u>

<신 설>

<u>날에</u> -	
<u><삭 제></u>	

② (현행 제3항과 같음)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5(노무제공자의 범위 등) 이 장을 적용함에 있어 노 무제공자 등은 다음을 의미한 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 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u>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u> <u>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u> 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 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 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 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무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노동부

<u>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u> 다.

3.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 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 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 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 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의16(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 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 공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 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 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노무 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 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 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 ③ 제91조의15제3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

<신 설>

<신 설>

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 항 및 같은 조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 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 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 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 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 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 <신 설>

급한다.

- ②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 정된 평균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보험료 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 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 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 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 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 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 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 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 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 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

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5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 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 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별표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① ~ ③ |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④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 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무제 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 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의 제공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 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 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플랫폼 운영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 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 한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 · 직종 · 보수 · 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플랫 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저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 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 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 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
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세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u>보험사무대행기관</u>
<u>또는 플랫폼 운영자</u>
② (현행과 같음)
<u><</u> 삭 제>

- 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 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 용하지 아니할 것
-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 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 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 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 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 할 수 있다.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장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

실을 알려야 한다.

- ①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①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제129조(과태료) <u><신</u> 설>

- ①·② (생 략)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제129조(과태료) ① 제116조제5항 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